



제431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규정 등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9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규정 등	2
2. 개정안 부칙	12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Ⅲ. 검토의견

1.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① ----- ----- -----.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보호자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¹⁾에 따른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신질환자를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이에 개정안은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교육부장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먼저 개정안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관련 결격사유로 신설하는 것은 ①자격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하여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고, ②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재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이 포함된 입법례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료인·장애인재활상담사 등 해당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로 대면하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수렴·조종면허와 같이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해당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제16조 및 제20조를 통해 현재도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를 제한하고 있고,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자격의 성격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이 포함된 사례]

구분	입법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인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 상담사	「장애인복지법」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렵면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5. 12. 22. 기준)

- 참고로, 현행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는 '24년 3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고자 '20년 12월에 개정되어 '21년 6월에 시행된 것임.²⁾ < 참고자료1: 자격 취득 및 결격사유 관련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비교 >

□ 다음으로 개정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되, 개인정보의 내용·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법 제21조의2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1호)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제2호 및 제3호)를 두고 있는데,

2) < 유치원 교원의 정신질환 관련 제도 현황> 자료: 교육부

① 예비교원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부적격자는 심층면담 및 전문상담프로그램 이수 지원(「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② 현직 교원(국·공립)의 경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를 거쳐 휴직 처리

*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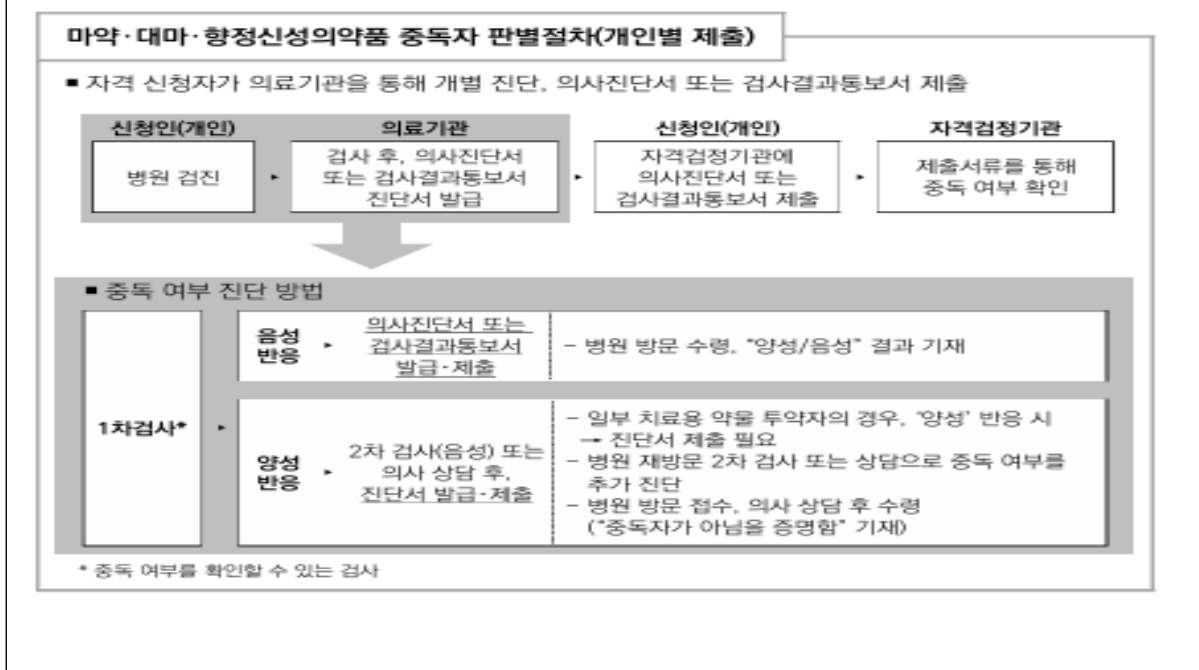
자격검정 업무편람(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는 자격신청자가 의료기관 등을 통해 개별 진단을 통해 제출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통해 확인하고, 성범죄 경력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하고 있음.³⁾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방법]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일반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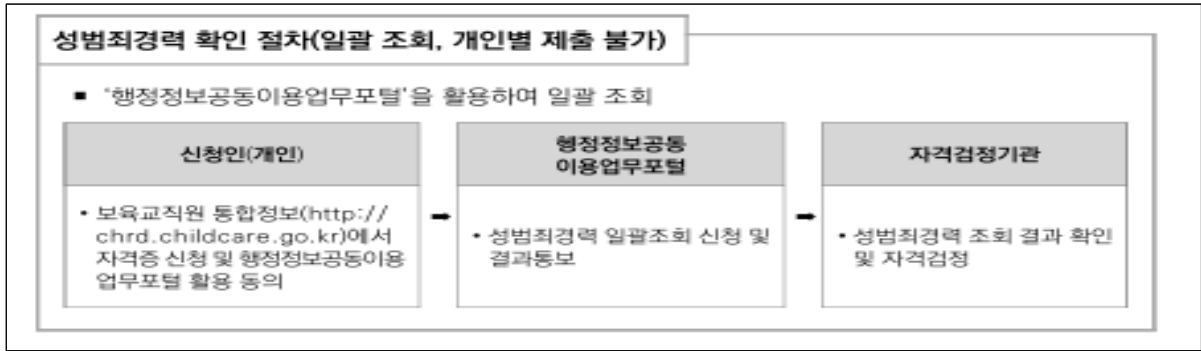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적용대상
 - 어린이집 원장(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40인 미만)
 - 보육교사(1·2·3급)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후 재교부 신청자

○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절차



3) 실무적으로 자격검정 및 자격증(확인서) 교부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확인서)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5-14호, 2025.5.26.)



* 자료: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2025년, 교육부) p. 11 참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⁴⁾은 범죄경력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음⁵⁾.

따라서, 개정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이미 일정 부분 마련되어 있고,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민감정보’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여부는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보가능한 정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정보수집 기관, 수집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사전확인과 현재 개인이 진단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기관 간 직접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어떤 점에서 결격사유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2항의 입법례⁶⁾와 유사한 구조로 보이나, 개인정보 중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와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⁷⁾ < 참고자료2: 정신질환으로 인한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 입법례(「수상레저안전법」) >

6)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법 제51조의3에 범죄경력자료 등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관련 직무 수행을 허가하는 ‘면허’와 달리 ‘자격’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 어린이집 근무는 별개 사항으로 정신질환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신청자가 아닌 기관을 통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대구교육청은 향후 유보통합을 위하여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현행 보육교직원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시행일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2조(적용례)는 현행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신설시 부칙[법률 제20380호]⁸⁾과 제22조⁹⁾을 참고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7

8) 부 칙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 1

자격 취득 및 결격사유 관련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비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u>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u>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삭제 <2010. 3. 24.> ⑤ 삭제 <2010. 3. 24.>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 [법률 제17661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

통보기관의 장	개인정보의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2. 병무청장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3.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4.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참고 3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발급 통계

(단위: 명)

구분	원장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소계
2007	49,636	64,607	35,222	10,755	110,584
2008	36,673	51,359	47,087	11,558	110,004
2009	30,504	30,527	59,076	12,029	101,632
2010	29,520	24,048	62,291	10,784	97,123
2011	26,251	24,171	65,627	9,664	99,462
2012	32,956	28,455	73,074	9,599	111,128
2013	73,067	37,753	76,523	9,566	123,842
2014	58,129	42,036	78,224	8,323	128,583
2015	6,409	26,829	50,295	4,613	81,737
2016	7,335	26,793	46,651	2,651	76,095
2017	10,118	26,660	53,826	2,252	82,738
2018	10,608	22,261	31,560	1,711	55,532
2019	9,754	22,329	29,917	1,422	53,668
2020	9,657	20,422	28,219	1,168	49,809
2021	8,814	19,283	26,762	923	46,968
2022	7,476	16,432	26,088	548	43,068
2023	6,250	14,516	23,889	324	38,729
2024	6,218	13,994	20,623	239	34,856
2025.11.	4,515	11,565	17,024	133	28,722

자료: 교육부